

『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선산읍 교리, 화조리, 동부리 일원에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실시함에 있어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(세입, 세출)명시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 제60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 -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명시함.

○ 검토 결과는

-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명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마련된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함.